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49
----------	-----

2023년 6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26일, 박성연 의원 외 2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6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성연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위험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지속

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사항들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안전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의료기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 (2) 시장의 책무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지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복지지원사업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 (5)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6)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 12조 신설).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그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

[표]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div style="text-align: right;"><신설></div>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소방전문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 ⑥ (생략)

<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증진, 정신건강증진**-----
-----.

③ -----
-----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
--- **현황, 정신건강**-----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
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5.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6.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
7.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8.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
9.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10.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1.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12.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

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정의 추가 관련(안 제2조제7호)

- 안 제2조제7호의 신설은, 기존 정의에 “소방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 “소방전문 의료기관”은 상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함)제10조1)에 따라 소

- 1)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

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소방전문 의료기관”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전문 의료기관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정의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참고)

[표] 수정의견(안) 조문대비표 (안 제2조제7호)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소방전문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3)

-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은, 시장의 책무로써 현행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책무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그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해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제2항제4의2호 신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정신건강도 반영토록하려는 것임.
- 다음으로, 안 제8조의3 신설은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부적인 지원사항과 재정적지원,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소방공무원복지법」 제7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은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 이처럼 상위법령의 기본계획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개정안에서 시장의 책무로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서 보다 특화된 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취지로 이해되어 긍정적인 조치라 여겨짐.

- 다만, 개정안 제5조제2항제4의2호의 경우 가지조문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 호번호 '4의2'를 '제5호'로 하고,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한편, 제8조의3제3항과 제4항의 '관련기관'의 경우 현행 제8조제5항에 시장에게 소방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으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수정의견(안) 조문대비표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3 관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증진, 정신건강증진 ---- -----	② ----- ----- (개정안과 같음) ----- -----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 -----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 -----.	③ ----- ----- ----- ----- (개정안과 같음)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 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⑥ ----- ----- (개정안과 같음) ----- ----- -----

	<p>2. <u>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u></p> <p>3. <u>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u></p> <p>4. <u>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u></p> <p>5. <u>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④ <u>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2. ----- -----</p> <p>3. ----- -----</p> <p>4. -----</p> <p>5. ----- -----</p> <p>② ----- ----- -----</p> <p>③ ----- ---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 ----- -----</p> <p>④ ----- ----- -----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 ----- -----</p>
--	---	---

다. 후생복지 사업지원 관련(안 제8조, 제8조의2조)

- 안 제8조와 안 제8조의2의 신설은, 기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조례 체계를 갖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즉, 현행 제8조의 조제목에서 복지사업을 분리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으로 하는 한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안 제8조의2를 새

로이 신설하여 조제목을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으로 하고 있음.

- 여기서, 안 제8조의2제1호의 경우 복지지원 사업으로 ‘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2)에 따르면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동 개정안의 발의자인 박성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50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 제8조의2제4호, 제7호, 제8호는 삭제하여 관련 내용을 의안번호 제750호의 조례안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조례 간 중복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표] 수정의견(안) 조문대비표 (안 제8조, 제8조의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 ⑥ (생략) <신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 ----- (개정안과 같음) ----- -----.

2)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 14. (생략)

	<p>1. <u>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u></p> <p>2. <u>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u></p> <p>3. <u>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u></p> <p>4. <u>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u></p> <p>5. <u>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u></p> <p>6. <u>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u></p> <p>7. <u>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u></p> <p>8. <u>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u></p> <p>9. <u>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u></p> <p>10. <u>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u></p> <p>11. <u>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u></p> <p>12. <u>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1. -----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p> <p>2. -----(개정안과 같음)----- -----</p> <p>3. -----(개정안과 같음)----- -----</p> <p><삭 제></p> <p>4. ----- ----- (개정안과 같음)----- -----</p> <p>5. -----(개정안과 같음)----- -----</p> <p><삭 제></p> <p><삭 제></p> <p>6. ----- ----- (개정안과 같음)----- -----</p> <p>7. ----- ----- (개정안과 같음)----- -----</p> <p>8. ----- ----- (개정안과 같음)----- -----</p> <p>9. ----- ----- (개정안과 같음)----- --</p>
--	---	--

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관련(안 제12조)

- 안 제12조의 신설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담당 과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 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성별간 균형을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 선임기준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혹은 소방령,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유형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하겠음.
- 다만, 안 제12조제4항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토록하고 있는데 ‘위촉’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길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 위원 중에는 내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수정의견(안) 조문대비표 (안 제1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안)
	<신 설>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심의위원회) ① ----- ----- ----- (개정안과 같음)----- ----- ----- ----- ② -----

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말한다)에서

-----.

1. -----(개정안과 같음)-----

2. -----
----- (개정안과 같음) -----

3. -----
----- (개정안과 같음) -----

4. -----
----- (개정안과 같음) -----

5. -----
----- (개정안과 같음) -----

③ -----

----- (개정안과 같음) -----

-----.

④ -----

----- 임명 또는 위촉하는 -----
-----.

1. -----

2. -----

----- (개정안과 같음) -----

추천하는 공무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
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
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정안과 같음)-----

4. -----
-----(개정안과 같음)-----

⑤ -----
-----(개정안과 같음)-----
-----.

⑥ -----
-----(개정안과 같음)-----
-----.

⑦ -----
-----(개정안과 같음)-----
-----.

⑧ -----
-----(개정안과 같음)-----
-----.

⑨ -----
-----(개정안과 같음)-----
-----.

⑩ -----
-----(개정안과 같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소방전문 의료기관”의 정의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준용하여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토록 하고,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중 ‘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에 대해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게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8조의2제1호 중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을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7호, 제8호를 삭제하면서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안 제8조의3제3항 중 “관련 기관”과 “관련 기관 등”을 각각 “제8조 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으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 중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소방전문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u>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u>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u></p> <p>-----</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5. -----</p> <p>----- (현행과 같음) -----</p> <p>-----</p> <p>-----</p>	<p>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p> <p>① -----</p> <p>----- (개정안과 같음) -----</p> <p>-----</p> <p>-----</p> <p>-----</p> <p>-----</p> <p>-----</p> <p>-----</p> <p>② ----- (개정안과 같음) -----</p> <p>-----</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6. -----</p> <p>-----</p> <p>-----</p> <p>-----</p>
<p>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p> <p><u>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u></p>	<p>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p> <p>-----</p>

	<p>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견학</u></p> <p>2.~3. (생략)</p> <p>4. <u>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u></p> <p>5.~6. (생략)</p> <p>7. <u>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u></p> <p>8. <u>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u></p> <p>9.~12. (생략)</p>	<p>------(개정안과 같음)----- -----.</p> <p>1.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p> <p>2.~3. (개정안과 같음)</p> <p><삭 제></p> <p>4.~5. (개정안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6.~9.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 ② (생략)</p> <p>③ <u>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④ <u>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 ----- -----..</p> <p>④ ----- ----- -----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 -----.</p>
<p><신 설></p>	<p>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p> <p>① ~ ③ (생략)</p> <p>④ <u>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1. ~ 4. (생략)</p> <p>⑤ ~ ⑩ (생략)</p>	<p>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심의위원회)</p> <p>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 ----- ----- ----- 임명 또는 위촉하는----- -----.</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⑤ ~ ⑩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증진”을 “증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방에”를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

조”를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현황”을 “현황, 정신건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으로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

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 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증진, 정신건강증진-----</p> <p>③ -----</p> <p>-----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u>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u></p>
<p>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p> <p>-----</p> <p>②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u></p>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 ⑥ (생략)

<신설>

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
--- 현황, 정신건강-----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상, 모범·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
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

그럼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